

## 【 해외금융 뉴스: 유럽 】

### 영국, 보험계약법 개정 추진

□ 영국의 법개정 검토를 맡고 있는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와 스코틀랜드법률위원회(Scottish Law Commission)는 보험계약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12월 15일까지 보험계약자의 고지와 허위진술에 대한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초안을 제출하기로 함.

- 1906년에 제정된 현재의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의 고지의무를 계약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불고지 또는 허위진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무효 사례가 증가해 옴.
- 2001년 설립된 영국금융민원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미지급 분쟁이 해결되고는 있으나,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쟁조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법률위원회 등은 개정안 제출에 앞서 2007년 7월부터 동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시행하였고 이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얻음.
  - 설문대상인 61개의 보험유관기관(소비자단체, 영국금융민원서비스 등) 중 대다수가 동 개정안에 대해 찬성
  - 설문대상인 39개 보험사 중 영국보험협회를 포함한 4개사만 반대
- 그러나 소비자보험이 아닌 기업보험은 해외영업까지 포함하는 등 적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률적인 개정이 어려우며, 소비자보험보다는 강화된 고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여 기업보험 계약법개정 합의에는 실패

\* Law Commission은 Law Commission Act 1965(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기구로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4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기존 법규를 재검토하고 개정을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스코틀랜드 지역에 대해서는 Scottish Law Commission이 동일 임무를 수행

\* 보험계약법은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불고지(Non-Disclosure), 계약무효(Breach of Warranty)로 구성

\* Financial Ombudsman Service는 보험계약자와 영국내 금융기관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의거하여 2001년에 설립

□ 동 개정안에는 이해가능하며, 납득하기 쉽고, 분명한 입장 천명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향후 보험계약과 지급간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임.

- 계약자의 자발적 고지는 보험자가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성실 고지로 변경됨으로써 고지의 책임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자로 이전될 예정임.
- 허위진술도 고의성이 없다면 보험금지급 면책사유가 될 수 없고, 무모한 진술이 아닌 부주의에 기인한 진술일 경우 비례적인 보험금지급이 가능할 예정임.

(Law Commission, Guardian, 11/29)